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8. 12. 14.
총무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8년 11월 23일
- 다. 상정일자 : 제58회 정기회 제7차 위원회 ('98. 12. 14)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조병하

가. 개정이유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슬기로운 극복과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복무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개정골자

-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지장이 있을때에 직권면직 대상으로 했던 것을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개정함. (안 제9조 제1호)
-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 2, 안 제10조의 3)
-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부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관수)

- 동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98년 9월 19일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도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마포구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규정된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으로 정하고, 휴직등에 관한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9조 제1호의 개정내용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여 직권면직하는 경우 종전에는 6월이상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던 것을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에 규정된 당해공무원의 휴가기간 이상의 근무기간을 인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10조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종전에는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본문내용을 일부개정하는 것이고, 안 제10조의 2 및 안 제10조의 3을 신설하여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한 휴직일 경우의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항과 제3항에는 근무상한 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와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8년 9월 2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통보된 표준안 내용대로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 안의 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일자 : 1998.11.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당면한 국가경제난의 슬기로운 극복과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 단축과 복무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개정골자

- 가.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징이 있을때에 직권면직 대상으로 했던 것을 “서울특별시마포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 이상”으로 개정함.(안 제9조제1호)
- 나. 휴직기간 및 휴직의 효력 규정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 다.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부칙)

3. 개정근거

- 지방공무원법(1998. 9.19 법률 5568호) 제2조제3항제2호, 제4항
- 지방자치법(1996. 12.29 법률 제5069호) 제15조, 제103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6월이상”을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식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 중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성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 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 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31일에 종료된다.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 인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9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9조(직권면직) -----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 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서울특별시 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제10조(휴직)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휴직)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세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신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신설〉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식증인 별정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자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되며, 복직일 전 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